

충청북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27
----------	-----

제출년월일 : 1999. 12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1. 제안이유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16,125호, '99.2.26) 됨에 따라 동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기타 현행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 보완하여 주민편익을 도모하고 옥외광고물의 효율적 관리에 기여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허가대상 광고물등중 높이가 4미터미만인 불링핀 모형 또는 도료표시·옥상간판, 공중에 띄우거나 높이 4미터미만 지면표시 애드벌룬·선전탑, 비행선이용광고물등은 원색사진과 설계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허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나. 현수막, 벽보, 전단의 경우에는 점인·압인 또는 천공을함으로써 옥외광고물신고필증 교부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함

다. 광고물등의 추가적인 표시방법으로 연막, 연기등 기체를 사용하거나 광선등을 벽면, 공중또는 물체에 투시하여 표시하는 방법금지.

라.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하여 대규모 점포의 등록을 한 건물 또는 상업지역과 공업지역내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의 건물 벽면에 설치한 게시시설에는 현수막을 4개까지 표시할 수 있도록 함.

마. 단일형 지주를 이용하는 현수막은 모든 업소에 표시가 가능토록 완화함.

단, 업소당 1개를 원칙으로 하되, 건물의 연면적 500제곱미터 초과시마다 1개씩 추가하여 최대 4개이내허용

바. 연립형 지주를 이용하는 현수막을 표시할 수 있는 업소는 다음과 같으며 업소당 1개에 한하여 최대 3개 이내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대규모 점포
- 공중위생법 및 관광진흥법에 의한 호텔, 휴양콘도미니엄
- 관광진흥법에 의한 국제회의장, 종합휴양시설, 전문휴양시설.

사. 창문이용광고물은 건물 5층이하의 창문과 출입문에 당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자의 성명, 주소, 상호, 상표, 전화번호, 영업내용 또는 상징형 도안에 한하여 표시하되 표시면적은 창문면적의 2분의 1 이내로 함.

아. 전광류광고물의 공공목적에 위한 내용의 시간당 표출비율을 25퍼센트 이상으로 함.

자.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풍양속의 유지 또는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를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광고물등에 대하여 제거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한후 그에 따른 소요비용 징수

차. 영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 받을 수 있는자를 다음과 같이 규정함.

- 건축사법에 의하여 건축사 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
-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관련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옥외광고, 건축, 전기분야의 기술 자격을 취득한 자의 단체 또는 비영리 법인

카. 옥외광고업종사자의 종류별 교육을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옥외광고업종사자 교육을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기준을 폐지하며, 광고업 종사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증빙서류를 첨부 교육불참신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때
-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중일 때
- 향토예비군법, 민방위기본법에 의한 교육훈련기간과 중복된 때
- 관혼상제,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때

4. 의안전문 : 따로붙임

5. 관계법령 발췌 : 따로붙임

충청북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충청북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광고물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 ①도지사는 영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의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영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광고물등은 허가신청을 할 때 원색사진과 설계도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영 제31조제3항·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네온을 사용하거나 전자식발광 또는 화면변환의 특성을 이용하는 전광류 광고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옥상간판중 옥상바닥으로 부터의 높이가 4미터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간판과 게시시설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간판
2. 영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 부터 5미터 미만인 광고물로서 1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미만인 돌출간판
3. 영 제5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 부터 4미터미만인 지주이용간판
4.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과 지면에 표시하는 높이 4미터미만인

애드벌룬

5. 선전탑

6. 영 제4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비행선을 이용하는 광고물

7.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충청북도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

③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광고물등중 현수막·벽보·전단의 경우에는 점인 또는 압인, 천공을 함으로써 신고필증 교부를 갈음할수 있으며 그 규격은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④도지사는 영 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광고물등의 표시기간 종료일 30일전까지 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게 표시기간 종료를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표시기간이 60일이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영 제9조제4항·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대상 광고물등중 도지사에게 신고함으로써 표시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광고물등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다만, 영 제31조제3항·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네온을 사용하거나 전자식발광 또는 화면변환의 특성을 이용하는 전광류 광고물과 당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와 관련이 없는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영 제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돌출간판

2. 영 제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주이용간판

3. 영 제15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가로형 간판

4. 영 제19조제2항제1호·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옥상간판 또는 높이가 4미터미만인 불링판 모형의 옥상간판

5.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설치하는 애드벌룬

6.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

⑥영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대상 광고물등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광고물을 제외한 광고물은 도지사에게 신고함으로써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당해 건물명,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주소·상호·상품·영업내용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과 관련이 없는 내용을 표시한 광고물
2.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등중 네온을 사용하거나 전자식발광 또는 화면변환의 특성을 이용하는 전광류 광고물

제3조(광고물등의 표시제한) ①도지사는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등의 표시를 금지하거나 표시방법을 제한하기 위한 특정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구역 및 표시금지 또는 표시방법의 제한내용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4조(광고물등의 추가적인 표시방법) 영 제13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등의 추가적인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연막이나 연기등 기체를 사용하여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2. 광선등을 벽면이나 공중에 투사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3. 광고물등의 바탕색은 적색 또는 흑색인 원색의 사용을 2분의1 이내로 하여야 한다.

제5조(옥상간판의 표시방법) ①영 제19조제5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옥상간판간의 수평거리는 30미터이상으로 한다.

②도지사는 관할 행정구역의 경계로부터 30미터이내 지역안에 옥상간판을 허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접한 시·도지사와 미리 협의 하여 옥상간판간의 수평거리 30미터 이상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에드벌룬의 표시방법) ①영 제23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중에 띄우는 에드벌룬간의 수평거리는 1킬로미터이상으로 한다.

②도지사는 관할 행정구역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이내 지역안에 영 제23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을 허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접한 시·도의 시·도지사와 미리 협의하여 애드벌룬간의 수평거리 1킬로미터이상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영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애드벌룬에 대하여는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영 제26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은 다음 각호 같다.

1. 버스·택시승강장, 노선버스안내표지판, 휴지통 벤취, 관광안내도, 지정벽보판, 도시보행자안내표지판,현수막지정게시대
2. 기타 도지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공공시설물

②영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로등주를 이용하는 광고물중 영 제26조제3항제1호·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표시할 수 있는 경우는 가로등의 기능을 보완하거나 도시경관의 훼손 및 도로교통에 장애를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도지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③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때에는 그 지역과 가로등주의 수량, 표시방법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8조(세로형간판의 표시방법) 영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세로형 간판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건물의 1층 출입구 양측에 각각 하나의 간판만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건물명이나 당해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상호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에 한하여 영 제15조 제3호·제4호의 규정에 의한 간판이 표시되지 않은 건물의 정면이나 측·후면에

- 입체형으로 된 하나의 간판을 표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간판의 크기는 가로 3미터이내, 세로는 건물높이의 2분의1이내이어야 한다.
2. 제1호의 본문 규정에 의한 판류이용간판의 크기는 가로 60센티미터이내, 세로 200센티미터이내이어야 한다. 2이상의 간판을 연립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간판을 합한 전체의 크기는 또한 같다.
 3. 벽면과 밀착시켜야 하며, 벽면으로 부터의 돌출폭은 30센티미터이내이어야 한다.

제9조(공연간판의 표시방법) 영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공연간판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간판의 가로크기는 건물전면폭의 3분의1 이내이어야 하고, 세로 크기는 건물높이의 4분의1이내이어야 한다.
2. 벽면과 간판과의 간격은 40센티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3. 공연중 또는 다음 공연의 내용에 관하여 각각 하나의 간판만을 표시하여야 한다.
4. 간판의 하단과 지면과의 간격은 3미터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현수막의 표시방법) ①영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현수막은 벽면이용, 지정게시대이용, 지주이용으로 구분하며, 그 일반적인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표시내용은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자의 성명·주소·상호·상표·영업내용·행사내용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게시대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바탕색은 3원색 및 흑색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주변 또는 건물과 조화되게 표시하여야 하고 창문을 막아서는 아니된다.
3. 현수막의 규격은 게시시설 또는 지주의 규격을 따른다. 다만, 제4항제3호에 의한 단일형지주를 이용하는 현수막의 경우에는 그 하단

과 지면과의 간격을 2미터이상유지하여야 하고, 가로와 크기는 세로크기의 2분의1이내(좌우대칭형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지주부분을 제외한 각각의 현수막을 합한 전체의 가로길이는 또한 같다) 이어야 한다.

4. 현수막은 떨어지거나 바람에 날려 도시경관을 해치거나 안전을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5. 현수막(지정게시대 포함)을 표시하기 위하여 전기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벽면을 이용하는 현수막 등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야 한다.

1.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하여 대규모 점포의 등록을 한 건물 또는 영 제19조제1항제1호의 본문 규정에 의한 상업지역과 공업지역내의 연면적 3천제곱미터이상의 건물 벽면에 영 제5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후 설치한 게시시설에만 표시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의한 게시시설의 길이는 당해 건물폭(창문부분의 면적을 제외한다)의 5분의1이내, 세로의 길이는 건물의 높이 이내로 표시하되, 게시시설의 상단은 건물의 상단을 초과할 수 없으며 게시시설의 하단과 지면과의 간격은 4미터이상이어야 한다.

3. 게시시설은 당해 건물전체에 4개 이내로 설치하여야 하며, 하나의 게시시설에는 하나의 현수막만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지정게시대를 이용하는 현수막 등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야 한다.

1. 지정게시대는 시장·군수가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가로는 10미터이내,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8미터 이내로 표시하여야 하고 재질은 스테인레스·알루미늄 등 우수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지정게시대는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주변경관과

조화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3. 하나의 지정게시대에는 동일한 내용의 현수막은 하나만 표시할 수 있다.

④지주를 이용하는 현수막등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야 한다.

1. 현수막을 표시할 수 있는 지주는 단일형과 연립형으로 구분하며, 단일형은 하나의 지주에 하나의 현수막을 표시하거나 2개의 현수막을 좌우 대칭형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하고, 연립형은 2이상의 지주를 사용하여 여러개의 현수막을 연립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써 제3항에 의한 지정게시대와 유사한 형태의 것을 말한다.
2. 지주의 재질은 스테인레스·알루미늄 등 우수한 자재를 사용하여 하고, 주변경관 또는 건물과 조화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 단일형지주는 당해 건물의 대지안의 공지에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이내이어야 하고 하나의 건물에 하나만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건물에 입주한 업소수등 여건상 하나의 지주에만 표시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물의 연면적 500제곱미터 초과시마다 1개씩(최대 4개이내)추가하여 설치할 수 있다.
4. 연립형지주는 당해 건물의 대지안의 통행할 수 없는 공지에 설치하여야 하며, 가로는 6미터이내,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5미터 이내로 설치하여야 하고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업소에 한하여 업소당 하나만을 설치할 수 있으며, 표시할 수 있는 현수막의 수량은 3개이내이어야 한다.

가.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대규모 점포

나. 공중위생법 및 관광진흥법에 의한 호텔, 휴양콘도미니엄

다. 관광진흥법에 의한 국제회의장, 종합휴양시설, 전문휴양시설
라. 기타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고시한 업소

제11조(벽보의 표시방법) 영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벽보는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지정게시판 또는 지정벽보판에 부착하여야 한다.
2. 크기는 가로 40센티미터이내, 세로 55센티미터이내이어야 한다.

제12조(전단의 배부방법) 영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전단은 다음과 같이 배부하여야 한다.

1. 전단은 직접 나누어 주거나 건물출입구 등에 설치한 배부함을 통해 배부하여야 한다.
2. 전단의 크기는 가로 30센티미터이내, 세로 40센티미터이내이어야 한다.

제13조(교통수단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영 제13조제9항 및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열차 또는 자동차의 외부에 표시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자가가 소유하는 열차 또는 자동차의 외부의 창문부분을 제외한 좌·우 양측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2. 소유자의 성명·명칭·영업소명·전화번호·자기제품의 상표 또는 상징형 도안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다.
3. 표시면적은 각각측면(창문부분을 제외한다)면적의 4분의1이내 이어야 한다.
4. 광고물에 전기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영 제13조제9항 및 영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비행선(항공법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한 무인비행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광고물을 표시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비행선의 좌·우 양측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2. 공중통행의 안전을 위하여 주간(일출시부터 일몰시까지)에만 띄울 수 있고, 항공법의 관련규정을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3. 도지사는 비행안전을 위하여 허가전에 신청인에게 비행계획을 제출하도록 하여 비행하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항공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4. 도지사는 관할 행정구역의 밖에서 비행하고자 하는 비행선에 표시 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시·도지사 및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허가를 한 경우에는 비행노선을 지정하고, 당해 시·도 의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교통수단이용 광고물의 표시에 대하여는 영 제10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4조(창문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영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창문이용광고물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건물 5층이하의 창문과 출입문에 표시하여야 하며, 창문에 표시할 경우에는 창문 면적의 2분의 1 이내로 광고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2. 당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자의 성명·주소·상호·상표·전화번호·영업내용 또는 상징형 도안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다.
3. 사용하는 색채는 건물과 조화되어야 한다.

제15조(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도지사는 네온 또는 전광류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빛의 밝기가 생활환경을 침해한 것으로 의심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여부를 판단한다. 이 경우 2인이상의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영 제31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광류 광고물의 공공목적을 위한 내용의 시간당 표출비율은 25%이상으로 하며, 그 세부기준은

도지사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목적에 위한 내용을 표출함에 있어 국정 홍보, 관계법령 입법예고, 기타 일반공익광고는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도정 홍보내용은 도지사가, 시정·군정 홍보내용은 시장·군수가 각각 정하여 표출의뢰하는 사항을 표출하여야 한다.

제16조(표시방법의 완화) 영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특정 구역 안에서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을 완화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표시위치 또는 장소
2. 광고물등의 규격·모양 또는 색깔
3.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

제17조(위원회의 구성) 영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 위원 은 다음의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1호 규정에 의한 공무원인 위원은 업무비중을 감안하여 당연직으로 정할 수 있다.

1. 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건축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 공무원
2. 국어·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건축·디자인 등을 전공한 학자 또는 전문가
3. 기타 광고물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18조(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①영 제34조제1항제2호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
2. 도시계획법상 미관지구안의 높이 4미터이상 옥외광고물등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3. 표시면적 40제곱미터이상의 지주이용간판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4. 1면의 표시면적이 10평방미터이상으로써 네온을 사용하거나 전자식 발광 또는 화면변환의 특성을 이용하는 전광류 광고물의 표시 허가에 관한 사항
5. 기타 도지사가 옥외광고물등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위원회는 제1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전문가·이해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9조(안전도검사) ①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도검사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옥외광고물등안전도검사서에 의하여 실시하되 검사자는 확인 서명하고 그 내용을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도검사를 실시할 검사공무원을 그 소속하의 건축직·전기직·토목직 기타 관계공무원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제20조(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①영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건축사법에 의하여 건축사 사무소의 등록을 한자 및 건축사 관련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2. 국가기술자격법(자격기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에 의한 옥외광고·건축·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3. 기타 제1호 내지 제2호에 규정된 자와 동등한 검사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검사인력·시설·장비를 갖추어야 하되, 시·도지사는 그 인원 및 시설의 규모, 장비의 종류 및 수량을 별도로 정하여 제21조제2항에 의한 위탁계획에 포함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옥외광고·건축·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분야별 1인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2. 사무실
3. 작업차량, 사다리, 절연저항계, 카메라, 망원경 및 기타 도지사가 안전도검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시설·장비

제21조(안전도검사업무의 위탁절차등) ①도지사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중에서 1인 이상의 자를 지정하여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위탁기간, 위탁받을자의 임무,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옥외광고물등 안전도검사업무위탁지정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을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옥외광고물등안전도검사업무 위탁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⑥도지사는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위탁받은 자의 명칭 및 위탁기간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⑦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도검사업무를 수행

하는 자에게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검사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22조(안전도검사를 위탁받은 자의 검사절차 등) ①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안전도검사를 실시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옥외광고물등안전도검사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서를 접수한 때에는 법령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지체없이 안전도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안전도검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법령 및 이 조례에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도지사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시정조치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위반에 대한 조치 및 비용징수)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는 미풍양속의 유지 또는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를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광고물등에 대하여 제거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에 따른 실제 소요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24조(옥외광고업의 신고) ①도지사는 영 제41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옥외광고업신고(변경)대장에 의하여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옥외광고업자는 영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신고필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옥외광고업신고필증재교부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영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을 신고한 자가 휴업·재개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옥외광고업(휴업·재개업·폐업)신고서를 작성, 옥외광고업 신고필증을 첨부(재개업을 한 경우를 제외한다)하여 30일이내에 도지사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

제25조(옥외광고업종사자에 대한 교육) ①도지사는 영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별표1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교육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종류별 교육을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매년 3월말까지 다음사항을 포함한 당해 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1. 교육의 종류별 실시시기·내용·시간 및 장소
2. 교육을 받아야할 대상자
3. 교육실시방법·수강절차·비용
4. 기타 교육에 필요한 사항

③도지사는 교육실시 15일전까지 교육대상자를 확정하여 개별통지를 하여야 하며, 교육당일 참석여부를 필히 확인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보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도지사는 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옥외광고업종사자 교육수료필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12호서식의 옥외광고업종사자 교육이수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⑤도지사는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교육을 수강하거나 종업원을 수강하게 하는 옥외광고업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⑥교육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전에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3호서식의 옥외광고업종사자 교육불참 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때

2.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중일 때

3. 향토예비군법, 민방위기본법에 의한 교육훈련기간과 중복된 때

4. 관혼상제,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때

제26조(교육의 위탁) ①도지사는 영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종사자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기간,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임무·자격요건 및 선정방법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하며, 위탁받고자 하는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옥외광고업종사자교육위탁지정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종사자에 대한 교육 실시를 위탁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옥외광고업종사자 교육위탁지정서를 교부하고, 위탁받은 자의 명칭·대표자·성명·주소·위탁기간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교육의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④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25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한 당해연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2월말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교육을 위탁받은 자가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이수대장을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고, 도지사는 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옥외광고업종사자 교육 수료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⑥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도지사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을 수강하거나 그 종업원을 수강하게 하는 옥외광고업자에게 교육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제25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금액과 산출근거를 사전에 공고하여야

하며,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교육을 실시한 후 그 교육실시결과, 교육비용의 수납 및 집행내역 등을 도지사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제27조(영업정지등의 처분) ①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또는 폐쇄명령의 처분기준은 별표2와 같다.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한 때에는 별지 제16호 서식의 옥외광고업행정처분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영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 또는 폐쇄명령의 처분내용을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보할 때에는 그 옥외광고업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업소명·처분내용 및 일자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28조(권한의 위임) ①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의 권한중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3과 같다.

②도지사는 필요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시장·군수로 하여금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29조(수수료) ①법 제1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수수료는 별표4, 동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물등의 안전도검사 수수료는 별표5, 동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 신고수수료는 별표6과 같으며, 수수료금액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길이는 소수점이하 2자리까지 산정하고, 산정금액중 10원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허가신청 또는 신고시에 수입증지를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안전도검사를 위탁한 경우에는 안전도검사 수수료를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정한 방법에 따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30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①도지사는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 당사자등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의 사전 통지와 의견청취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별지 17호서식에 의거 위반사실과 과태료금액등을 명시하여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도지사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를 참작하여야 하며, 그 부과기준은 별표7과 같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방법등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의해 허가 또는 신고된 사항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1. 옥외광고물등의 표시기간의 표시
2. 옥외광고물등의 허가·신고·안전도검사 및 옥외광고업 신고수수료
3. 안전도검사와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업무의 위탁시행

【별표 1】

옥외광고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의 종류·내용 및 시간(제25조 관련)

종 류	교육시간	교 육 내 용	교 육 대 상	비 고
신규교육	6시간	○ 관계법규- 3시간 (옥외광고물등관리법, 건축법, 도시계획법, 도로법 등) ○ 표시에 관한 사항 - 3시간 (색채, 재료, 구조, 제작, 시공, 도시미관, 안전 등)	○ 신규로 옥외광고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 (대표자, 종업원)	○ 옥외광고업 종사전에 교육이 없는 경우에는 종사이후 최초로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함
행정처분에 의한 교육	3시간	○ 관계법규 (옥외광고물등관리법, 건축법, 도시계획법, 도로법 등)	○ 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옥외광고업자	
보수교육	3시간	○ 관계법규 (옥외광고물등관리법, 건축법, 도시계획법, 도로법 등)	○ 옥외광고업 종사자 (대표자, 종업원)	○ 관계법령의 제·개정시 실시
기타교육	별도정함	○ 세부교육시간, 교육내용, 교육대상 등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도지사가 정하여 공고함		

【별표 2】

영업정지 또는 폐쇄기준(제27조 관련)

위 반 사 항	처 분 기 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가. 무허가 광고물등의 조치(변경포함)	영업정지 1월미만	영업정지 1월이상 2월미만	영업정지 2월이상 또는영업폐쇄
나. 무신고 광고물등의 조치(변경포함)	영업정지 15일미만	영업정지 15일이상 1월미만	영업정지 1월이상
다. 표시방법위반 광고물등의 조치	영업정지 1월미만	영업정지 1월이상 2월미만	영업정지 2월이상 또는 영업폐쇄
라. 금지 또는 제한지역, 장소, 물건에 표시된 광고물 등의 조치	영업정지 1월미만	영업정지 1월이상 2월미만	영업정지 2월이상 또는 영업폐쇄
마. 금지 광고물등의 조치	영업정지 1월미만	영업정지 1월이상 2월미만	영업정지 2월이상 또는 영업폐쇄
바. 안전도검사에 합격되지 못한 광고물등의 조치	영업정지 1월미만	영업정지 1월이상 2월미만	영업정지 2월이상 또는 영업폐쇄
2. 이 법에 위반되는 광고물등을 설치하여 공중에 위해를 끼칠때	영업정지 1월미만	영업정지 1월이상 2월미만	영업정지 2월이상 또는 영업폐쇄
3. 제24조 제3항에 의한 휴·폐업신고를 하지 아니 하고, 30일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영업정지 1월이상	영업정지 1월이상 2월미만	영업정지 2월이상 또는 영업폐쇄
4.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영업정지 1월미만	영업정지 1월이상 2월미만	영업정지 2월이상 또는 영업폐쇄

※ 적용상의 유의사항

- (1) 위반행위의 회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 (2) 위반행위가 2이상일 때에는 그 중 중한 처분기준(중한 처분기준이 동일한 때에는 그 중 하나의 처분기준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 (3) 영업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전에 당해 영업에 행하여진 처분(이미 처분기간이 경과한 처분, 처분기간이 진행중인 처분을 포함한다)의 효과는 양수인이 이를 승계한다.

【별표 3】

권한위임사항(제28조 관련)

번호	위임사무명	근거법령
1	광고물등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법 제3조 영 제4조 내지 제8조
2	광고물등의 표시·신고수리에 관한사항	법 제3조 영 제4조 내지 제8조
3	허가 및 신고사항의 변경과 기간연장등에 관한 사항	법 제3조, 제9조
4	가림간판규격의 설정	영 제19조제7항 및 제20조제6항
5	광고물등의 안전도검사에 관한사항	법 제9조, 영 제39조
6	안전도검사 업무의 위탁	법 제9조, 영 제40조
7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법 제10조
8	옥외광고업의 신고수리에 관한 사항	법 제11조, 영 제41조
9	옥외광고물등의 허가취소	법 제13조
10	영업정지등에 관한 사항	법 제14조, 영 제44조 및 제45조
11	허가·신고·안전도검사·옥외 광고업의 신고에 따른 수수료의 징수	법 제17조
12	과태료의 부과징수	법 제20조

【별표 4】

옥외광고물등의 표시허가·신고수수료(제29조 관련)

가. 일반 옥외광고물

(단위: 원)

구분 광고물의 종류	단위	기 준	지역별수수료	
			시	군
1. 가로형간판				
가. 일반가로형간판 (나향외의 간판)	개	· 6제곱미터 이하 · 6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3,000 1,000	2,000 1,000
나. 건물 측·후면의 4층이상 판류 이용간판 (영 제15조제4호)	개	· 20제곱미터 이하 · 20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30,000 2,000	24,000 2,000
2. 세로형간판	개	· 6제곱미터 이하 · 6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2,000 1,000	1,000 1,000
3. 돌출간판	개	· 3.5제곱미터 이하 · 3.5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 이·미용업소 및 의 료기관 약국 표지등	15,000 500 4,000	10,000 500 3,000
4. 공연간판	개		4,000	3,000
5. 옥상간판	개	· 10제곱미터 이하 · 10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35,000 4,500	30,000 4,000
6. 지주이용간판	개	· 10제곱미터 이하 · 10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15,000 2,000	12,000 2,000

구분 광고물의 종류	단위	기 준	지역별수수료	
			시	군
7. 애드벌룬 가. 공중에 띄우는 것 나.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 다. 지면에 설치하는 것	개	· 옥상간판에 준함 · 지주이용간판에 준함	15,000	10,000
8. 공공시설이용 광고물 가. 일반공공시설물 나. 전주·가로등주	개	· 1제곱미터 이하 · 1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 10개 이하 · 10개 초과시 5개당 가산	2,000 1,000 4,000 2,000	2,000 1,000 3,000 2,000
9. 교통시설(지하도) 이용광고물	개	· 5제곱미터 이하 · 5제곱미터 초과	9,000 10,000	4,500 5,000
10. 교통수단이용 광고물 가. 비행선 나. 차량 양측면	대		400,000 2,000	400,000 2,000
11. 선전탑	개		4,000	3,000
12. 아취광고물	개		4,000	3,000
13. 현수막 가. 현수막 나. 현수막 게시시설	개	· 10제곱미터이하 · 10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3,000 7,000 1,500	2,000 5,000 1,000
14. 벽 보		· 50매당	2,500	2,500
15. 전 단		· 1,000매당	2,500	2,500

구분 광고물의 종류	단위	기 준	지역별수수료	
			시	군
16. 광고물등중 전기를 이용하는 경우 (백열등이나 형광등을 이용하여 단순조명을 하는 광고물을 제외)	개	해당 종류의 광고물 수수료의 2배를 적용		

나. 특별법에 의한 광고물

(단위 : 원)

구분 광고물의 종류	단위	기 준	지역별수수료	
			시	군
1. 시내·시외·전세 버스 외부광고	대		2,000	2,000
2. 영업용 화물자동차 외부광고	대		1,500	1,500
3. 영업용 택시광고	대	· 지주이용간판에 준함	1,000	1,000
4. 차량탑재영상광고	대		350,000	350,000
5. 공중전화부스이용 광고	개	· 1제곱미터 이하	3,000	3,000
		· 1제곱미터 초과시 · 1제곱미터당 가산	1,000	1,000

※ 광고물의 종류에 포함되지 않은 특별법에 외거 표시되는 광고물등에 대하여는 일반 옥외광고물등의 표시허가 수수료를 적용한다.

다. 수수료의 징수방법

- (1)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중 광고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본 수수료의 2분1을 적용한다. (영 제9조제1항 관련)
 - 광고물등의 규격·위치·장소변경은 수수료의 전액 적용
- (2)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본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영 제9조제3항 관련)

【별표 5】

옥외광고물등 안전도검사 수수료(제29조 관련)

(단위 : 원)

광고물등의 종류 (게시시설 포함)	적 용 기 준	수 수 료
1. 옥상간판	· 연면적 50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 50제곱미터 이상 70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 70제곱미터 이상은 1제곱미터당 가산	15,000 30,000 1,000
2.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 으로부터 5미터이상이고 1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 이상인 돌출간판	· 연면적 3.5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 3.5제곱미터 이상 10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 10제곱미터 이상은 1제곱미터당 가산	10,000 15,000 1,000
3. 건물 4층이상에 설치하는 가로형간판	· 면적 6제곱미터 미만 · 면적 6제곱미터 이상 20제곱미터 미만 · 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은 1제곱미터당 가산	10,000 15,000 500
4. 지면으로 부터의 높이가 4 미터이상인 지주이용간판	· 연면적 10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 10제곱미터 이상 20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은 1제곱미터당 가산	10,000 15,000 500
5. 영 제2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4미터이상의 게시시설을 이용하여 설치하 는 애드벌룬 가.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 나. 지면에 설치하는 것	· 1의 옥상간판에 준함 · 4의 지주이용간판에 준함	

※ 제23조에 의거 안전도검사를 위탁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부가가치세를
가산하여 적용할 수 있다.

【별표 6】

옥외광고업 신고수수료(제29조 관련)

(단위: 원)

구 분	단 위	수수료	관 련 법 규	비 고
신 규	업소당	10,000	법 제17조 제3항	
변 경	업소당	5,000	법 제17조 제3항	

※ 옥외광고업의 변경신고사항 중 다음의 경우에는 수수료의 납부를 면제한다. (영 제41조제3항)

- (1) 관할구역내에서 주소를 변경한 때
- (2) 업소명을 변경한 때

【별표 7】

과태료부과기준(제30조 관련)

위 반 사 항	과 태 료 금 액
1. 법 제10조제1항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자	
가. 가로형간판, 세로형간판	
(1) 면적 6제곱미터미만	5만원이상 10만원미만
(2) 면적 6제곱미터이상 20제곱미터미만	10만원이상 20만원미만
(3) 면적 20제곱미터이상	20만원이상 50만원이하
나. 돌출간판(이·미용업소 및 의료기관·약국의 표지 등 제외)·지주이용간판·지면에 설치하는 애드벌룬	
(1) 연면적 5제곱미터미만	5만원이상 10만원미만
(2) 연면적 5제곱미터이상 10제곱미터미만	10만원이상 20만원미만
(3) 연면적 10제곱미터이상	20만원이상 50만원이하
다. 공연간판	10만원이상 50만원이하
라. 옥상간판, 4층이상 건물의 벽면에 표시하는 가로형 간판, 옥상에 설치하는 애드벌룬	
(1) 연면적 20제곱미터미만	10만원이상 20만원미만
(2) 연면적 20제곱미터이상	20만원이상 50만원이하
마.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 선전탑, 아취광고물	10만원이상 30만원이하
바.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	
(1) 동일종류 광고물을 10개미만의 시설물에 표시	10만원이상 20만원미만
(2) 동일종류 광고물을 10개이상 50개미만의 시설물에 표시	20만원이상 30만원미만
(3) 동일종류 광고물을 50개이상의 시설물에 표시	30만원이상 50만원이하
사. 교통시설이용 광고물	
(1) 5개미만	10만원이상 20만원미만

위 반 사 항	과 태 료 금 액
(2) 5개이상 20개미만 (3) 20개이상 아. 교통수단이용 광고물중 비행선을 이용하는 광고물 자. 신고대상광고물(현수막, 벽보, 전단, 교통수단이용 광고물, 돌출간판중 이·미용업소 및 의료기관· 약국의 표지등) 차. 창문이용광고물 카. 영 제13조제6항에 해당하는 고정되지 않은 이동식 간판(노상입간판 등) 타. 전기를 이용하는 경우 (위 가 ~ 사호에 적용)	20만원이상 30만원미만 30만원이상 50만원이하 30만원이상 50만원이하 10만원이상 50만원이하 (벽보종이류는 장당 5,000원) 10만원이상 50만원이하 개당 10만원 해당종류의 광고물 과태료 의 1.5배를 적용
2.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100,000원이상 200,000이하
3. 계속위반에 대한 가중처벌 가. 최근 1년내 2차위반 나. 최근 1년내 3차위반 다. 최근 1년내 4차위반	1차위반금액의 120% 1차위반금액의 150% 고발조치

【별지 제1호서식】

옥외광고물등 표시(변경)허가 및 신고대장

①번호	광고주(옥외광고업자)						광고물등의 내용				관 리 자			⑱ 변경 사항	비고			
	② 성명	③ 주민등록 번호	④ 업소명	⑤ 전화 번호	⑥ 주소	⑦옥외광 고업신고 번호	⑧ 종류	⑨ 수량	⑩ 규격	⑪ 표시 위치	⑫ 표시 기간	⑬ 광고 내용	⑭ 준공 일자	⑮ 성명	⑯ 주소	⑰ 전화 번호		

353mm × 250mm 인쇄용지(2급) 60g/m²

【별지 제2호 서식】

옥외광고물 표시 신고필 검인(제2조 관련)



현수막 : 지름 7센티미터이상

벽보·전단 : 지름 5센티미터이내

※ 다만, 천공의 방법인 경우에는 이를 변형하여 적용할 수 있다.

〈뒷 면〉

구 분		검 사 항 목	적 정	부적정
광 고 물 종 류 별 점검사항	일반사항	설계도서와 시공과의 상이점		
		부재의 부식 유무		
		광고면의 퇴색 여부		
	옥상간판	옥상바닥의 균열 및 건물의 노후여부		
		구조물의 볼트결손,조임,부식유무		
		광고판과 구조물의 부착상태		
	지주간판	지반침하, 주변환경, 누수유무		
		매립부 부식여부, 기초와의 연결상태		
	돌출, 벽면 부착 간판	벽면구조와 시공법 적정여부		
		볼트 부식으로 고착·조임 불량여부		
		벽면 변형여부		
		간판과 벽면의 연결 지지대 상태		
구성부재에 관한 점검사항	설계도서와 사용부재 일치여부			
	지지방법 명확, 적정여부			
	처음의 위치에서 이동유무			
	지지부의 변형유무			
	볼트-넛트 조임, 마모, 파손,유실유무			
	용접부의 균열, 변형, 부식 유무			
	부재의 도장불량, 부식으로 강도저하유무			
	골조의 변형으로 광고면판의 이탈유무			
	부재의 노후로 광고면판의 부착상태 불량 유무			
	문자, 부속자재(트렌스,안정기등)이탈유무			
	전자자재의 노후로 접촉, 절연불량, 화재위험 유무			
	주변여건 변경과 건물 개보수로 광고물에 미치는 영향			
	천재지변, 인위적사항 변동 후의 점검사항	강풍후, 폭우후, 폭설후, 폭발·충격후		

【별지 제4호 서식】

옥외광고물등 안전도검사대장

① 신청 번호	② 신청 일자	신 청 자			⑥광고물등 허가일자 (허가번호)	⑦광고물등 의종류	⑧표시위치 또는장소	⑨광고물등 의 규격	⑩ 검사 일자	⑪ 검사 구분	⑫ 검사 결과	검 사 자			비 고
		③ 성명	④ 업소명	⑤ 주소								⑬ 소속	⑭ 직명	⑮ 성명	

353mm×250mm 인쇄용지(2급) 60g/m²

【별지 제5호서식】

제 호		처리기간	
옥외광고물등안전도검사업무위탁지정신청서		30일	
신청자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업 소 명 (단체명)		
	④ 주 소		
⑤영업장 소재지			⑥ 전 화 번 호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제40조 및 충청북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옥외광고물등안전도검사업무 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귀하			
구비서류 : 충청북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 및 인력·시설 확보에 관한 증빙서류 사본 1부.		수 수 료	
		없 음	

210mm×297mm(신문용지 54g/m²)

【별지 제6호서식】

제 호			
옥외광고물등안전도검사업무위탁지정서			
수 탁 자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업 소 명 (단체명)		
	④ 주 소		
⑤ 영업장 소재지			
⑥ 위 탁 기 간		19 . . . ~ 20 . . . (년 월)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제40조 및 충청북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합니다. 년 월 일 충청북도지사 (인)			

210mm×297mm(신문용지 54g/m²)

【별지 제7호서식】

○ 규 격 : 가로6cm × 8cm

○ 바탕 색 : 연녹색

○ 글 자 : 검정색

전 면

옥외광고물 안전도 검 사 원 증
사 진 (3.5×4.5)
충청북도

후 면

소 속:	
직 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자격기한(19 . . . ~20 . . .)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도검사자임을 증명함.	
년 월 일	
충청북도지사 (인)	

【별지 제8호서식】

옥외광고업 신고(변경)대장

① 신고 번호	② 신고 년월일	③ 업소명	대 표 자			⑦ 영업장 소재지	⑧ 영업내용	⑨ 종업원수	⑩ 변경사항	비고
			④ 성명	⑤ 주민등록 번호	⑥ 주소					

353mm × 250mm 인쇄용지(2급) 60g/m²

【별지 제9호 서식】

제 호				처리기간
옥외광고업신고필증재교부신청서				3 일
신 청 자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업 소 명		④ 전 화 번 호	
	⑤ 주 소		⑥ 신 고 번 호	
⑦ 재교부 신청사유				
충청북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옥외 광고업 신고필증재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귀하				
구비서류: 없음				수수료
				없 음

210mm×297mm(신문용지 54g/m²)

【별지 제10호서식】

제 호				처리기간
옥외광고업(휴업·재개업·폐업)신고서				즉 시
신 고 자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업 소 명		④ 신 고 번 호	
	⑤ 영업장소재지			
신 고 내 용	⑥ 신 고 구 분	휴업(), 재개업(), 폐업()		
	⑦ 기 간	19 . . . ~ 20 . . .		
⑧ 신 고 사 유				
충청북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휴업 재개업·폐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귀하				
구비서류: 없음				수수료
				없 음

210mm×297mm(신문용지 54g/m²)

【별지 제10호서식】

제 호 옥외광고업(휴업·재개업·폐업)신고서				처리기간	
				즉 시	
신 고 자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업 소 명		④ 신 고 번 호		
	⑤ 영업장소재지				
신 고 내 용	⑥ 신 고 구 분	휴업(), 재개업(), 폐업()			
	⑦ 기 간	19 . . . ~ 20			
⑧ 신 고 사 유					
충청북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휴업 재개업·폐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귀하					
구비서류: 없음				수수료	
				없 음	

210mm×297mm(신문용지 54g/m²)

【별지 제11호 서식】

제 호		옥외광고업종사자교육수료필증	
① 교육 과정명			
② 교육수료일자			
수 강 자	③ 성 명		
	④ 소 속 업 소 명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제42조 및 충청북도옥외광고물등관리 조례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물등에 관한 교육을 위와 같이 수료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충청북도지사 (인)			

210mm×297 인쇄용지(특급) 70g/m²

【별지 제12호서식】

옥 외 광 고 업 종 사 자 교 육 이 수 대 장

① 연 번	② 교 육 과정명	③ 교 육 수료일자	④ 소 속 업소명	⑤ 성 명	⑥ 주민등록 번호	비고

210mm×297mm 인쇄용지(특급) 60g/m²

【별지 제14호서식】

제 호		처리기간	
옥외광고업종사자교육위탁지정신청서		30일	
신청자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업 소 명 (단체명)		
	④ 주 소		
⑤영업장 소재지		⑥ 전 화 번 호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교육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귀하			
구 비 서 류		수 수 료	
1. 강의실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등 확보에 관한 서류.		없 음	

210mm×297mm(신문용지54g/m²)

【별지 제15호서식】

제 호				
옥외광고업종사자교육위탁지정서				
수 탁 자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업 소 명 (단체명)			
	④ 주 소			
⑤ 영업장 소재지				
⑥ 위 탁 기 간		19 . . . ~ 20 . . . (년 월)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옥외광고물등에 관한 교육을 위탁합니다. 년 월 일 충청북도지사 (인)				

210mm×297mm 인쇄용지(특급) 120g/

【별지 제16호서식】

옥외광고업 행정처분 대장

일련 번호	신고 번호	업소명	성 명 (대표자)	영업장소재지	위반사항	위반 횟수	처분내용	처분일자	비 고

297mm×210mm 인쇄용지(특급) 60g/m²

납 입 고 지 서			영 수 필 통 지 서			영 수 중		
제 호 연도 일반회계			제 호 연도 일반회계			제 호 연도 일반회계		
납 부 자	주 소		납 부 자	주 소		납 부 자	주 소	
	성 명			성 명			성 명	
새 입		(관)임시적세외수입 (항)잡수입 (목)과대료	새 입		(관)임시적세외수입 (항)잡수입 (목)과대료	새 입		(관)임시적세외수입 (항)잡수입 (목)과대료
위반사항			위반사항			위반사항		
금 액			금 액			금 액		
납부기한			납부기한			납부기한		
납부장소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위의 금액은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20조제2항 및 충청북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부과되었으니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수입일부인	충청북도 시(군) 정 수 관 귀 하		수입일부인	수납기관 : 충청북도 시장(군수)		수입일부인

(190mm×268mm신문용지 54g/㎡)

관련법령 발췌문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9조(광고물의 안전도검사) ①대통령이 정하는 광고물등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자는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를 위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안전도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0조(위반에대한조치) ①시·도지사는 제3조 내지 제5조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도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 그 광고물등을 관리하는 자, 광고주 또는 옥외광고업자(이하 “관리자”라 한다)에 대하여 광고물등의 제거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미관풍치의 유지 또는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를 위하여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광고물등의 제거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풍양속의 유지 또는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를 위하여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를 관리자에게 계고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등의 제거 기타 필요한 조치에 소요된 비용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며, 그 징수절차에 관한 행정대집행법 제6조제1항의 적용에 있어서는 “국세징수법의 예”를 “지방세체납처분의 예”로 본다.

제14조(영업정지등) 시·도지사는 옥외광고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6월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폐쇄를 명할 수 있다.

1.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2. 이 법에 위반되는 광고물등을 설치하여 공중에 위해를 끼친 때
3. 기타 이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제16조(권한의 위임) 시·도지사는 당해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그 권한의 일부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지방자치단체인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7조(수수료) 다음의 경우에는 그 허가 신청시·신고시 또는 안전도검사에 각각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0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2.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이하 “처분권자”라 한다)가 부과·징수한다.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제4조 (허가대상 광고물등) ①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표시 또는 설치(이하 “표시”라 한다)하여야 하는 광고물은 다음과 같다. <개정 91·12·17, 97·2·6, 99·2·26>

1. 제15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하는 가로형간판 및 최초로 표시하는 공연간판
2. 돌출간판. 다만, 의료기관 또는 약국의 표지등(“+” 또는 “약”을 표시하는 표지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미용업소의 표지등 및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미만인 광고물로서 1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미만인 돌출간판을 제외한다.
3. 옥상간판
4.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이상인 지주이용간판
5. 애드벌룬
6.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
7. 교통시설이용 광고물(제27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소에 표시되는 광고물을 제외한다)
8. 교통수단이용 광고물중 항공법에 의한 비행선을 이용하는 광고물
9. 선전탑
10. 아취광고물
11. 제1호 내지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외의 광고물로서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 다만, 백열등을 이용하여 조명을 하거나 형광등을 이용하는 광고물을 제외한다.

②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설치하여야 하는 게시시설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광고물을 설치하기 위한 게시시설로 한다. <개정 93·2·24, 97·2·6>

제5조 (신고대상 광고물)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 표시하여야 하는 광고물은 다음과 같다. <개정 99·2·26>

1. 제15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하는 가로형간판. 다만, 제15조

제 2 호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하는 가로형간판중 면적이 5제곱미터이하인 간판을 제외한다.

2. 세로형간판(건물의 출입구 양측에 표시하는 세로형간판을 제외한다) 및 공연간판(최초로 표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돌출간판중 의료기관 또는 약국의 표지등, 이·미용업소의 표지등 및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미만인 광고물로서 1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미만인 간판
4.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미만인 지주이용간판
5. 현수막
6. 교통수단이용광고물(제 4 조제 1 항제 8 호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을 제외한다)
7. 벽 보
8. 전 단

[전문개정 97·2·6]

제 7 조 (허가 및 신고절차등) ①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 1 호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대상 광고물등의 경우에는 제 1 호 및 제 2 호의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며,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조례가 정하는 광고물등의 경우에는 시·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제 1 호의 규정에 의한 원색사진과 제 2 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 및 도서의 일부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93·2·24, 97·2·6, 99·2·26>

1. 광고물등을 표시하고자 하는 장소의 주변을 알 수 있는 원색사진 및 광고물등의 원색도안
2. 광고물등의 형상·규격·재료·구조·의장등에 관한 설명서 및 설계도서
3. 타인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토지나 물건등에 광고물등을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을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삭제 <97·2·6>

②시·도지사는 광고물등의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광고물등중 현수막·벽보·전단의 경우에는 시·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필증의 교부에 갈음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99·2·26>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게시시설에 표시되는 광고물과 함께 그 게시시설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광고물에 대한 허가는 게시시설에 대한 허가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제8조 (허가 및 신고수리의 기준)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및 신고수리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광고물등의 표시가 제10조 내지 제12조 또는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것이 아닐 것
2.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은 제13조 내지 제32조의 규정에 적합할 것
3.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은 별표에 의할 것

제9조 (허가 및 신고사항의 변경과 기간연장등) ①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허가 또는 신고사항중 광고물등의 규격·광고내용·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변경사항에 관한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광고물등의 광고내용만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광고내용을 알 수 있는 원색사진 또는 원색도안만을 첨부한다. <개정 99·2·26>

②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허가를 받은 후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를 포함한다)는 본인 또는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 관리자의 주소·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된 때에는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의2서식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7·2·6, 99·2·26>

③제 7 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그 표시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하며, 그 기간만료일 15일전까지 별지 제 3 호서식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종전의 표시기간이 1년이상인 광고물등의 경우에는 제 7 조제 1 항제 1 호 및 제 3 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 및 도서(원색도안을 제외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91·12·17, 97·2·6, 99·2·26>

④제 3 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허가대상 광고물등중 제 39조제 1 항제 3 호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를 받아 합격한 광고물등으로서 시·도조례가 정하는 광고물등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함으로써 표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99·2·26>

⑤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내용의 변경허가를 받거나 제 3 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하는 광고물등중 시·도조례가 정하는 광고물등의 경우에는 제 1 항 및 제 3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함으로써 광고내용을 변경하거나 표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99·2·26>

제12조 (광고물등의 표시제한등) ①법 제 4 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는 제13조 내지 제3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지역중 특정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등의 표시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개정 92·5·30, 97·2·6, 99·2·26>

1.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미관지구 및 시설보호지구
2. 도시계획법시행령에 의하여 지정된 도시설계지구
3. 폭 30미터이상의 도로변
4. 기타 시·도지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구역

②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구역의 지정 및 광고물등의 표시 제한내용에 관하여는 시·도조례로 정한다. <개정 97·2·6, 99·2·26>

제13조 (광고물등의 일반적 표시방법) ①광고물의 문자는 한글맞춤법·국어의 로마자표기법·외래어표기법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외국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한글과 병기하여야 한다. <개정 93·2·24>

②광고물등은 상품·업소등을 상징하는 도형등으로 표시할 수 있다.

③광고물등은 제14조 내지 제31조에서 정하는 규격·방법등에 의하여 표시하되, 미관풍치와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장방형·정방형·타원형 기타 도형등으로 변형하여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변형된 광고물은 규정된 면적과 높이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97·2·6>

④광고물등은 교통·통행등에 지장이 없도록 표시하여야 하며, 풍압이나 충격등에 의하여 떨어지거나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광고물등에는 형광도로 또는 야광도로(도로를 바른 테이프를 포함한다)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⑥지면이나 건물 기타 공작물등에 고정되지 아니하고 이동이 가능한 간판은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⑦1개업소에서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수량은 3개이내로 한다. 다만, 도로의 곡각지점에 접한 업소는 4개이내로 한다. <신설 93·2·24>

⑧삭제 <99·2·26>

⑨제3조제14호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은 당해 교통수단의 소유자에 관한 광고내용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다. 다만, 비행선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시·도조례가 정하는 표시방법에 의한다. <신설 99·2·26>

⑩제1항 내지 제9항에서 규정한 표시방법외의 추가적인 표시방법에 관하여는 시·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신설 99·2·26>

제15조 (가로형간판의 표시방법) 가로형간판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91.12.17, 93.2.24, 97.2.6, 99.2.26>

1. 1개업소에서 하나의 간판만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 또는 제4호의 경우와 도로의 곡각지점에 접한 업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건물의 3층이하에는 건물의 정면에 판류를 이용하는 간판 또는 입체형 문자·도형등을 부착할 수 있다. 다만, 주유소의 상호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1면의 면적이 3.5제곱미터이하인 것으로서 두께가 30센티미터이하인 간판을 현수식으로 표시할 수 있다.
3. 건물의 4층이상에는 당해 건물명이나 당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상호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에 한하여 건물상단중 3면에 입체형으로 된 하나의 간판을 각각 부착할 수 있다.
4. 건물측면 또는 후면의 4층이상 벽면에는 판류를 이용하는 하나의 간판을 다음과 같이 부착할 수 있다.
가. 간판의 크기는 세로 8미터이내이어야 하고, 지면으로부터 간판 최상단까지의 높이는 52미터이내이어야 한다.
나. 상업지역안에 있는 건물로서 옥상간판이 표시되지 아니한 건물에 한하여는 제14조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와 관련이 없는 내용을 표시할 수 있다.
5. 가로크기는 당해 건물의 폭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되며, 세로크기는 윗층과 아랫층의 창문간 벽면의 폭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6. 간판은 벽면에 밀착시켜야 하며 벽면으로부터의 돌출폭은 30센티미터이내이어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간판의 돌출폭은 40센티미터이내로 할 수 있으며,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전광류의 광고물의 돌출폭은 도로 및 보도상의 공간을 점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160센티미터이내로 할 수 있다.

제19조 (옥상간판의 표시방법) ①옥상간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자기의 건물(자기가 소유하거나 건물 연면적의 2분의 1이상을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당해 건물명이나 자기의 성명·상호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을 내은 또는 전광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입체형 또는 도료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3·2·24, 97·2·6>

1.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상업지역(하나의 건물이 다른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상업지역에 있는 것으로 본다. 이하 같다)과 공업지역(도시계획구역밖에 있는 공장 및 그 부속건물은 공업지역에 있는 것으로 본다. 이하 같다). 다만, 그 지역이 주거지역과 연접되어 주거환경이나 도시미관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시·도지사가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을 제외한다.
2. 철도역·공항·항만·버스터미널 및 트럭터미널의 건물과 그 연접지역으로서 시·도지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
3. 시·도지사가 지역여건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

②옥상간판을 표시할 수 있는 건물의 최저층수는 특별시에서는 5층, 광역시(군지역을 제외한다)에서는 4층 또는 5층중 당해 광역시의 조례가 정하는 층, 시(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서는 4층, 군(시의 읍·면지역을 포함한다)에서는 3층으로 하고, 최고층수는 13층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층수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97·2·6>

1. 14층이상의 자기의 건물 옥상에 당해 건물명이나 자기의 성명·상호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을 입체형 또는 도료로 직접 표시하는 경우
2. 최저층수미만의 자기의 건물에 당해 건물명이나 자기의 성명·상호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을 높이 180센티미터이내의 간판(1면인 경우에 한한다)으로 표시하는 경우

3. 공업지역에 있는 공장 및 그 부속건물에 표시하는 경우

4. 철도역·공항·항만·버스터미널 및 트럭터미널의 건물에 표시하는 경우

③공업지역에 있는 공장 및 그 부속건물에는 하나의 옥상간판에 그 공장의 상호와 그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광고만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97·2·6>

④옥상간판의 표시규격은 다음과 같다. <개정 92·5·30, 93·2·24, 97·2·6, 99·2·26>

1. 가로를 접한 1면의 면적은 300제곱미터이내(가로 최대길이 30미터이내), 세로를 접한 1면의 면적은 225제곱미터이내(세로 최대길이 20미터이내), 높이 15미터이내로 하되, 그 높이는 건물높이의 2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2. 승강기탑·계단탑·망루·장식탑·옥탑 기타 이와 유사한 건축물의 옥상구조물위에 설치하는 경우, 옥상구조물의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당해 건축물의 건축면적(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면적을 말한다)의 8분의 1이하인 때와 옥상구조물의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당해 건축물의 건축면적의 8분의 1을 초과하고 당해 간판이 옥상구조물의 벽면의 직상수직면으로부터 돌출된 경우에는 옥상구조물의 높이는 광고물의 높이에 산입하고 건물의 높이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3. 간판의 높이는 제2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건물의 옥상바닥으로부터 산정하고, 당해 간판을 표시하는 건물의 높이·층수등의 산정방법은 건축법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하는 간판의 경우에는 옥상난간벽면의 높이중 110센티미터를 제외한 지점부터 그 높이를 산정한다.

⑤옥상간판의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개정 93·2·24, 97·2·6>

1. 간판은 옥상바닥의 끝부분으로부터 안쪽에 표시하여야 한다.

2.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안에서는 간판(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애드벌룬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간의 수평거리가 30미터 내지 50미터이상으로서 당해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거리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자기의 건물에 자기의 업소가 입주하여 상품선전이 아닌 자기업소의 상호 또는 이

를 상징하는 도형을 표시하는 간판과 공업지역안에 있는 공장 및 그 부속건물에 표시하는 간판은 이 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간판간의 수평거리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간판으로 보지 아니하며, 특별시 및 광역시(군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도로중 왕복 8차로이상의 도로와 시 및 군지역에 있는 도로중 왕복 6차로이상의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는 간판간에는 이 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수평거리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목조건물·가건물 또는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얻지 아니한 건물에는 게시시설 또는 간판을 설치하거나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⑥옥상간판의 설계는 건축법에 적합하여야 하며, 건축사법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한 자가 설계하여야 한다. 다만, 높이 180센티미터이하인 간판과 게시시설없이 옥상구조물에 입체형 또는 도료로 직접 표시하는 간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7·2·6>

⑦제10조제2항제4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가림간판인 옥상간판의 표시에 대하여는 제1항제1호, 제2항, 제4항제1호 및 제5항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93·2·24, 97·2·6>

⑧제1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불링핀 모형의 옥상간판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신설 99·2·26>

1. 자기가 사용하는 건물의 옥상에 한하여 표시하되, 네온·전광 또는 점멸등의 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2. 13층이하의 건물옥상에 표시하여야 한다.
3. 간판의 규격은 높이 8미터이내로 표시하되, 당해 건물높이의 4분의 3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4. 제4항제2호·제3호 및 제5항제1호·제3호의 규정을 지켜야 한다.

제23조 (애드벌룬의 표시방법) ①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99·2·26>

1. 수소등 발화성 기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2. 공중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여야 하고, 줄이 끊어지거나 풀어지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다른 광고물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여야 한다.
3.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의 건물옥상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신축하는 아파트·다세대주택·오피스텔 및 상가의 분양을 위하여 표시하는 경우와 새로 영업을 시작한 업소로서 영업개시후 3월 이내에 영업내용등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이 아닌 지역의 건물옥상에 표시할 수 있다.
4.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간에는 1킬로미터이상으로서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수평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당해 애드벌룬을 이 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애드벌룬간의 수평거리 적용에 있어서 애드벌룬으로 보지 아니한다.
5. 애드벌룬의 직경은 5미터이내이어야 하고, 길이 7미터·폭 120센티미터이내의 광고물을 현수식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전체높이는 건물옥상의 고정부분으로부터 30미터이상 50미터이내로 하여야 한다.
6. 흑색류와 적색류의 표시면적은 광고물의 전체표시면적의 2분의 1이내이어야 한다.

②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애드벌룬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99. 2. 26>

1. 애드벌룬을 표시할 수 있는 지역은 제19조제1항 각호와 같다. 다만, 자기의 건물에 자기의 성명·상호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애드벌룬을 표시할 수 있는 건물의 최저층수는 시〔특별시 및 광역시(군지역을 제외한다)를 포함하고,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서는 4층, 군(시의 읍·면지역을 포함한다)에서는 3층으로 하고, 최고층수는 13층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저층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 가. 공업지역에 있는 공장 및 그 부속건물에 표시하는 경우
 - 나. 철도역·공항·항만·버스터미널 및 트럭터미널의 건물에 표시하는 경우
 - 다. 자기의 건물에 자기의 성명·상호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을 표시하는 경우

3. 공업지역에 있는 공장 및 그 부속건물에는 하나의 애드벌론으로 그 공장의 상호와 그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광고만을 표시하여야 한다.
4. 애드벌론의 높이는 15미터이내, 폭은 10미터이내로 하되, 그 높이는 당해 건물높이의 4분의 3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5. 애드벌론의 표시방법에 관하여는 제19조제 5 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불량핀 모형의 간판을 표시할 경우에는 제19조제 8 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③지면에 설치하는 애드벌론의 표시방법에 관하여는 제20조제 1 항 내지 제 4 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97·2·6]

제26조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은 다음과 같다. <개정 93·2·24, 97·2·6>

1. 전주 및 가로등주
2. 철도역·공항·항만·버스터미널 및 트럭터미널의 광장에 설치되어 있는 시계탑·조명탑·교통안내소·안내게시판 및 일기예보탑
3. 고속국도휴게소에 설치되어 있는 안내탑·시계탑·조명탑·교통안내소 및 게시판
4. 기타 시·도조례로 정하는 공공시설물

②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93·2·24>

1. 공공시설물의 효용을 저해하여서는 아니된다.
2.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부분에 표시하여야 한다.
3. 표시면적은 공공시설물 면적의 4분의 1이내이어야 한다.

③전주 또는 가로등주에 부착하는 광고물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가로등주를 이용하는 광고물은 제 1 호·제 4 호 및 제 5 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표시할 수 있다. <개정 97·2·6>

1. 기둥에 밀착시켜야 하며, 돌출하여서는 아니된다.
2. 하나의 전주 또는 가로등주에는 하나의 광고물만을 표시하여야 한다.
3. 도로표지 또는 교통안전표지가 부착된 전주 또는 가로등주에는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4. 광고물의 가로크기는 기둥둘레의 2분의 1이내, 세로크기는 1미터이내이어야 한다.
5. 간판의 하단과 지면과의 간격은 160센티미터이상이어야 한다.
6. 시·도지사가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안의 전주 또는 가로등주에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0조의2 (기타 광고물등의 표시방법등)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류된 광고물 등중 동조제2호·제4호·제7호·제10호·제11호·제14호 및 제17호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등의 표시 또는 배부방법은 시·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본조신설 99·2·26]

제31조 (광고물중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①광고물중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97·2·6>

1. 전기자재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하여 검정을 받은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전기배선은 외부에 노출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전선을 연결하는 부분은 피복 처리하여야 한다.
3. 전기공사의 설계와 시공은 전기공사업법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②형광등을 사용하여 표시하는 때에는 형광등이 간판의 외부에 직접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네온을 사용하는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개정 93·2·24, 99·2·26>

1. 적색류네온의 표출면적은 전체표시 면적의 2분의 1이내이어야 한다.
2.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하는 경우에도 제10조제1항 각호의 지역 중 전용주거지역·일반주거지역·시설보호지구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의료기관 또는 약국과 일반주거지역중 폭이 15미터이상인 도로변을 제외한다.
3. 빛이 점멸하거나 화면이 변화하는 광고물을 도로와 연접된 장소에 차량의 진행방향과 직각이 되게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 광고물의 하단은 지면으로부터 10미터이상이어야 한다.
4. 교통신호기로부터 보이는 직선거리 30미터이내에는 빛이 점멸하거나 신호등과 같은 색깔(적색·황색 또는 녹색)을 나타내는 광고물을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15미터이상인 곳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광고표시면의 점멸 또는 화면의 변화횟수는 1분간에 7회이내이어야 한다.

6. 빛의 밝기 및 색깔은 시·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전자식발광 또는 화면변환의 특성을 이용하여 표시내용이 수시로 변화하면서 문자 또는 형상을 나타내는 전광류의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개정 97·2·6, 99·2·26>

1. 적색류의 사용은 전체표시 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형광성 적색류의 색상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2. 제3항제2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은 전광류의 표시방법에 이를 준용한다.

3. 공공목적에 위한 내용을 시·도조례가 정하는 비율이상 표출하여야 한다.

⑤시·도지사는 전기사업법에 의하여 전기의 공급 또는 사용이 제한되는 광고물에 대하여는 그 표시를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제32조 (표시방법의 완화) ①시·도지사는 광고물등의 표시가 미관풍치를 저해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지역중 특정구역을 지정하여 그 구역 안에서는 제13조 내지 제3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92·5·30>

1.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상업지역 및 미관지구

2.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설계지구

3. 폭 30미터이상의 도로변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구역을 지정하거나 표시방법을 완화하고자 하는 때에는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구역 및 표시방법의 완화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5장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제33조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등) ①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옥외광고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개정 97·2·6>

②위원은 관계공무원, 광고물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등중에서 시·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위원장·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수의 반수미만이어야 한다. <개정 97·2·6>

③위원장·부위원장 또는 위원은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전에 관하여는 그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신설 97·2·6〉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가 특정한 직위를 이유로 임명 또는 위촉된 경우에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34조 (위원회의 기능 및 회의) ①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99·2·26〉

1. 법 및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
2. 시·도조례에서 광고물등의 관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부의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

②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신설 97·2·6〉

④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0조 (안전도검사업무의 위탁등) ①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도조례가 정하는 자로 한다.

1.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2. 건축사 관련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3. 건축·옥외광고 관련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자와 동등한 안전도검사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검사시설 및 장비·검사자의 자격 및 인원수·검사요령 기타 안전도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99·2·26]

제41조 (옥외광고업의 신고) ①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의 신고를 수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옥외광고업신고필증을 옥외광고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옥외광고업자는 이를 영업장안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옥외광고업자는 신고사항중 성명(대표자)·업소명·영업장소재지·영업내용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후 15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42조 (옥외광고업 종사자등에 대한 교육)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1. 신규로 옥외광고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
2. 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옥외광고업자

②옥외광고업에 종사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1. 관계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으로 시·도지사가 보수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기타 시·도지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계획에 관한 사항은 시·도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99.2.26]

제43조 (교육의 위탁) ①시·도지사는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교육실시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교육기관·법인·단체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교육의 실시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시설기준등 교육의 위탁에 관한 사항과 교육실시방법·수강절차·교육비용의 징수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조례로 정한다.